

| | |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520 | 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|
| | | 심사보고서 |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12. 4.(목) 문기호 의원 외 4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4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5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문기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공인 관리관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홍숙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제시된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인 관리 주체 변경을 위한 것으로,
-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

며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
제40조(공인)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